

지정번호
제 호

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

기관명

성명
(대표자)

(생년월일:)

소재지

(전화번호:)

구조·치료대상
야생동물

지정조건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부장관
시·도지사

직인